

【붙임 1】 창업진흥원 채용 전형별 가점사항

구분	기준	가점사항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전형별 5점
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구성원	서류전형 2점
비수도권 지역인재	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붙임 4	서류전형 2점
경력단절여성	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1.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'26.1.21. 이전(해당일 포함)이어야 함 2.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※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('26.1.21. 이전 졸업자(해당일 포함)이어야 함	서류전형 2점
다문화가족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	서류전형 2점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탈북자	서류전형 2점
취업지원대상자 (국가보훈대상자)	「국가유공자법」 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	전형별 5점/10점*
자립준비청년	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·아동복지시설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. 접수마감일('26.7.20.)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자 (보호조치 종료일(시설 퇴소일 '21.7.21.)이후인 자) 2. 만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만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단,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('24.2.9.)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	서류전형 2점

구분	기준	가점사항
창업 경험	창업경험(휴·폐업자 포함, 본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한함)이 있는 자 ※ 공고일 이전 창업 유경험자에 한해 인정 (사업자등록증 상 채용공고일 이전 개업연월일에 한함)	서류전형 2점
창업진흥원 우수인턴 선정자	창업진흥원 우수인턴 선정자 ※ 인턴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규직원 채용 공고에 한하여 1회 혜택 부여 ※ '24.1.1. 이후 채용공고에 의해 입사한 우수인턴 선정자에 한함	서류전형 3점
창업진흥원 기간제계약직 경력자	창업진흥원 기간제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자 ※ 기간제법 제5조에 따라 동종·유사업무인 '일반행정'으로 근로한 기간제계약직 중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가점 부여	서류전형 2점

- ※ 우대사항은 접수마감일('26.7.20.)을 기준으로 인정
- ※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관계 법률에 의거 가점 부여
-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 직무별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. 단, 지원자의 수가 채용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